

2007. 1. 31.

국가청렴위원회 기업윤리센터

기업윤리 브리프스
Business Ethics Briefs

< 자 례 >

01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21세기의 연구 주제

18 중국이 추진중인 부패와의 전쟁

22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부 참여

27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

제일모직

한미약품

35 국내 윤리경영 동향

기업 관련

정부 관련

 이 자료는 국가청렴위원회 디지털기업윤리센터(<http://ethics.kicac.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I.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21세기의 연구 주제*

* 미국 Brigham Young 대학의 Paul C. Godfrey 교수와 Nile W. Hatch 교수가 공동집필하여 Journal of Business Ethics(vol. 70, 2007.1월)誌에 게재한 논문 “Researching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 Agenda for the 21st Century”를 번역, 정리한 것임

(요약)

- 본 논문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 CSR)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개념으로 간주하면서 회계학에서부터 경영학 및 신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과학문들에 걸쳐 나타난 CSR의 현 상태를 검토하고 있음
 - 글로벌화 및 다원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CSR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 실무 경영자들이 사회참여를 위해 행하는 미시적 차원의 자원 배분 과정을 이론화하고 이해관계자 및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한 사회참여의 결과를 측정할 수 있는 보다 세련된 방법이 강구되어야 함을 강조
 - 아울러 학문은 비서구적인 철학 및 경제적 관점들을 폭넓게 포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그리고 심지어는 순응적이지도 않은, 이해관계자들의 영향력까지도 설명하여야 함을 강조
- 본 논문은 각 분과학문이 다루고 있는 CSR의 현황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들이 CSR과 관련된 실무분야의 발전에 따라 다루어야 할 다섯 가지의 과제들을 제기하면서
 - 그리고 본 논문은, 제기한 과제들이 중요한 기업 연구 분야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더욱 심사숙고하고 더욱 엄밀하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음

1. 서론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은 학술 문헌상으로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개념으로서, 이는 ‘기업이 순수한 영리활동 차원을 넘어 사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비교적 단순한 아이디어로부터 생성되었는데, 그 이후 학자들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공용어(common language)의 형성을 도외시한 채 하나의 확실한 패러다임 완성에만 골몰하고 있는 실정임.
 - Carroll(1999)은 학술 문헌상의 CSR에 대한 서로 다른 25개의 개념 정의를 검토하여 발표하였는데, 다양한 개념정의 때문에 CSR의 추진 및 측정 방법에 대하여 혼동을 초래함
 - 하나의 합의된 개념 정의가 없어 CSR과 CFP(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 기업의 재무적 성과) 사이의 가설적 연결성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할 수 있는 확고한 실증적 연구결과가 미흡함
 - Margolis와 Walsh(2001)는 CSR과 CFP의 개선 간의 연결성을 규명하려고 90개가 넘는 실증적 연구들을 분류해보았으나, 뚜렷한 연결성을 찾지 못하였음
- 위와 같이 CSR과 CFP 간에 정확한 연결성이 없는 이유에 대하여 본 논문은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과 ‘더 넓은 개념인 CSR’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명확한 모델이 없었기 때문임을 제시
- 이러한 학문상의 혼동에도 불구하고, CSR은 경영실무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왔음
 - 1953년 미국 New Jersey주 대법원의 결정(A. P. Smith Manufacturing Co. v. Barlow, et al., 1953)으로 기업의 자선 행위가 합법화된 이후로 기업의 사회참여 행위가 어떤 형태로든 기업계의 공통된 관행으로 정착되어 오고 있음

- WRI(World Resources Institute), AccountAbility,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ISO(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UN 등과 같은 비정부조직들(NGOs) 모두가 기업들의 사회적 참여 및 성과 제고를 주창함에 따라 기업 관련 국제적 규범들은 CSR이 기업 관행의 주류가 되는 방향으로 진전되어가고 있음
- 본 논문은 CSR을 전문경영인, 특수이해관계자 집단 및 정부 정책입안자들에게 실용적으로, 규범적으로 계속 호소력을 가지는 경험적 실재(empirical reality)로 간주되고 있음
 - 또한 본 논문은 ‘CSR이란, 기업의 명시적인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보다 넓은 의미의 사회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로서 법에 의해 강제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한 McWilliams 과 Siegel(2001)의 견해를 수용하고 있음
- 본 논문은 이러한 견해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2가지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 첫째, 학자들에게 회계학에서부터 신학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분과학문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CSR에 관한 현재의 관점들을 개fir적으로 제시하고자 함
 - 둘째로, 다양한 문헌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어렵고 도전적이지만 반드시 해답을 구해야 하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과제를 제기하고자 함
 - 1) 재무적 손익(Financial Payoff)
 - 2) 이해의 균형(Balance)
 - 3) 이기적인 이해관계자(Selfish Shareholders)
 - 4) 대체(Substitution)
 - 5) 국제적 확장(Global Expansion)

2. 기업의 사회적 책임 : 주요 관점의 현황 (CSR : the state of thinking)

- CSR의 논의에 있어서 2개의 주요한 분과학문이 대척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경제학과 (사회적 책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철학이 바로 그것임
 - CSR 관련 논자들은 이러한 두 가지의 극한적 관점의 요소들을 결합시키고, 기업의 사회에 대하여 책임을 구성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한 다양한 모델, 논점 및 이론들을 창출하고 있음
 - 이러한 모델의 일부는 경제학과 도덕철학(moral philosophy)을 대립적인 힘(opposing forces)으로 보고 있는데 반해 그 외의 다른 모델들은 상호 보완적인 것으로 보고 있음
- <표1>은 이러한 이론 및 모델을 정치적 성향에 따라 맨 왼쪽의 순수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부터 맨 오른쪽의 순수 도덕적인 관점에 이르기까지 5가지의 범주로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음
 - 좌우의 극단적 관점 사이에는 3가지의 중간적인 관점들을 분류하여 제시하였는데, 특정 문헌상의 아주 적은 지식이라도 다른 학문에 대한 연구와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기대하여 불완전하지만 가급적 많은 문헌들의 목록을 제시
-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CSR에 관한 학문의 범주는 다양한 분과학문과 전문 실무분야가 망라되어 매우 광범위함
 - <표1>은 CSR과 관련하여 각 분야에서 많은 논쟁과 반대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고, 표에 나타난 참고문헌들은 여러 학문에 걸쳐 논쟁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를 보여주고 있음

- 이러한 중간단계의 이론화 작업은 기업들이 종종 사회적 목표와 기업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 세계를 좀 더 정확히 반영하게 됨
 - ‘動因주도형 프로젝트’(cause-driven projects)의 논리는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지면 손익계산서 효과(income statement effect)*나 저비용 생산을 통하여 기업의 복지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음
 - *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는 기업은 도덕심이 있는 고객의 구매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러한 고객이 기꺼이 높은 가격을 지불함으로써 기업의 시가(cash value)를 높이는 효과
 - 전략적 자선행위(strategic philanthropy)는 기업들이 다른 전략적 목표를 강화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충성도, 합법성, 신뢰성 또는 브랜드 자산(brand equity) 등을 형성함으로써 얻어지는 대차대조표 효과(balance sheet effect)를 주장함
 - 맨 왼쪽의 순수 도덕적 관점의 바로 옆에는 이해관계자 모델(stakeholder model)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기업이 사회참여를 하게 되면 많은 이해관계자 집단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수익성이 조정될 수 있고 경영자들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들을 균형 있게 충족시키거나 상쇄시켜야 한다는 입장임
- 지금까지는 CSR와 관련한 많은 논의들의 주요 관점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지금부터는 향후 수년간 해답을 구해야 할 보다 근본적이고, 도전적이면서 다소 풀기 어려운 과제들에 대하여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자 함

<표1>

	주주 자본주의	동인 관련 마케팅
CSR-CFP 관계성	- 부정적 관계	- “손익계산서 효과”를 통해 생성된 긍정적 관계
도덕적 전제: 주주 재산권	- 주주는 기업에 자본을 투입하고 기업의 잔여이익에 대하여 재산 청구권 보유 - 소유주의 동의 없이 재산처분 불가	-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한 재산권 위반 문제 없음
도덕적 전제: 사회 복지	- 기업은 대부분 경제적 재화의 생산을 통해 사회 복지에 공헌 (예: 제품, 서비스, 직업, 세입 등)	- 기업의 공헌은 사회의 복지와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침(예: 매출 증가, 단기적 사기 증가 등)
도덕적 기초: (미국)	- Dodge v. Ford Motor, 1919	
도덕적 기초: 재산권	- Locke류의 사유재산권 사상 (Locke, 1690/1988)	
도덕적 기초: 사회복지	- 공리주의(Bentham)	
시장 개념	- 자본시장	- 상품시장, 노동시장
대표적 분과학문	- 경제학 (Friedman, 1970; Riech, 1988; McWilliams and Siegel, 2001) - 재무관리(Guerard, 1997) - 법학(Berle, 1931; Easterbrook and Fischel, 1991; Minow, 1999)	- 법학(Buffett, 1997; Ostas, 2001) - 마케팅(cause-related marketing) (Varadarajan and Menon, 1988; Drumright, 1996; Mohr 등, 2001; Deshpande and Hithon, 2002) - 전략이론 (Porter and Van der Linde, 1995; Ford Foundation, 2001)
강점	- 경영 의사결정, 투자 및 도덕적 책임에 필요한 정지규칙 제공 - 주주에 대한 경영자의 엄격한 책임 규정 - 기업의 공헌과 관련된 대리인 문제 완화	- 엄격한 책임완수를 통한 사회 공헌 - 자선단체 및 사회문제를 위한 보다 높은 수준의 공헌 및 책임
약점	- 기업은 보다 큰 사회에서 독립적, 자율적이고 주주의 부를 넘어서는 책 임을 없음 - 사회복지에 대한 기업의 기여에 대 한 제한적 입장, 사회공헌을 위한 기회는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기업공헌은 사적 기부행위를 감소 대체할 수 있고, 시민적 관여를 감소시킬 수 있음 - 수혜조직이 기부 기업과 잠재적으로 나쁜 관계에 놓일 수 있는 위험 - 고객 또는 종업원들에게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음 - 사회적 동인이 충분한 사회적 필요성이 아닌 이익기회를 반영할 수 있음

전략적 자선행위	이해관계자 관리	기업 시민정신
- “대차대조표 효과”를 통해 생성된 긍정적 관계	- 긍정적 또는 부정적 관계 그러나 행동의 근거는 아님	- 긍정적 또는 부정적 관계 그러나 행동의 근거는 아님
- 공공 이익과 사회복지 증진이 주주의 잔여이익 청구권을 증대	- 기업의 재산권은 사회가 부여 - 사회는 권리에 수반하는 제한 사항과 책임을 규정 가능	- 주주의 재산권은 중요한 사회 제도와 기본적 인권 및 인간 존엄성 등의 범위 내에서만 의미를 지님
- 기업의 기여는 사회복지 및 기업의 전략적 대차대조표에 직접적이고 측정 가능한 영향을 미침 (예: 신뢰성, 충성도, 영업권의 증가 등)	- 기술 및 자원을 이유로 기업은 사회이익에 실질적인 공헌을 할 수 있음 - 기업의 개별적 책임은 전문 기술의 영역에 한정됨	- 보다 넓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은 폭넓게 사회복지에 기여할 책임을 지님(예: 방침, 전략, 기술, 자선 등)
- Paramount v. Time, 1990	- A.P Simith v. Barlow, 1953	- Alien Tort Caims Act, 1789
	- 확장된 재산권 개념 (Preston&Donaldson, 1995)	- 해방신학 (John Pall II, 1991)
	- Kant류의 권리, 의무, 책임 사상 (Kant, 1785/1956)	- 사회적 정의 (Rawls, 2000)
- 전략적 요소 시장	- 사회 혁신 지향적 시장	- 사회 통제 지향적 시장
- 회계학(Gray et al., 1996) - 경제학(Frank, 1996; Jenson, 2002) - 경영학-일반(Keim, 1978) - 경영학-인적자원관리 (Turban and Greening, 1996) - 정치학(Neihesiel, 1994) - 이해관계자론 (Jones, 1995; Halal, 2001) - 전략경영(Shrivastava, 1995; Post and Waddock, 1995; Fombrun et al., 2000; Hillman and Keim, 2001; Porter and Kramer, 2002)	- 경영학(일반)(Bellah, 1985; Margolis and Walsh, 2003) - 경영학-이해관계자론 (Freeman, 1994; Business Ethics Quarterly, 2002) - 법학 (Clark, 1916; Dodd, 1932; Blair, 1995; Bagley, Page 1999) - 철학(Richardson, 1997) - 전략경영(Hart, 1997)	- 경영학-기업과 사회론 (Waddock, 2001; Logsdon and Wood, 2002; Wood and Logsdon, 2002) - 경제학 (Daly and Cobb, 1994; Korten, 1996) - 신학 (Leo XIII, 1891; John Paul II, 1991)
- 사회 내에서의 기업의 역할과 기회에 대한 비전 제시 - 이해관계자에 대한 기업의 보다 폭넓고 깊은 헌신	- 기업을 보다 넓은 개념의 사회 관계 속에 포함 - 사회적 문제와 합법성간의 상충문제에 대한 관리적 대응을 용이하게 함	- 기업을 지구촌의 시민으로 정형화 - 사회복지에 대한 기업의 의미 있는 공헌을 위한 폭넓고 도전적인 주제를 제공
- 많은 현안의 사회적 문제가 기업의 전략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수 있음 - “전략적”인 것은 측정하기 어려워 대리인 관계의 남용에 노출됨 - “전략적 이익”은 투자에 대한 불분명한 정지원칙을 제공	- 사회참여를 위한 영구적인 정당화는 없음	- 사적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기업도 넓은 의미의 공공정책 역할을 수행 - 경영자의 자율성을 점점하기 위한 내부책임제도가 없음 - 민주적인 과정이나 절차보다 특수관계인집단과 대리인에게 책임이 부여됨

3. 향후의 연구 주제 : 중요한 과제들

(An agenda for future research : critical questions)

- CSR에 관한 향후의 연구 주제는 ‘CSR 활동이 하나의 포괄적인 활동이라기보다 많은 상이한 활동들의 집합적으로 이름’이라는 기본적인 입장에서부터 시작됨
 - 예컨대, 자선사업과 환경개선은 다른 종류의 사회참여이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행을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음
 - <표1>의 주요 입장들(anchor positions)이 나타내고 있는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들’을 CSR에 대한 하나의 글로벌 버전(a global version of CSR)으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한 기업의 전반적인 사회참여가 경영자들과 이해관계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폭넓은 세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함
 - 이러한 차원의 통합은 미시경제 모델링(micro-economic modeling)과 도덕철학화(moral philosophizing)를 이론적으로 나타내는 것과 아주 부합하는 것임
- 그러나 통합에 따른 간편함을 얻기 위해서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함
 - 이는 기업들이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됨으로써 적절하고 의미 있는 사회참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기업과 업종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차이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임
 - 더군다나 기업들이 개별 이해관계자들에 대해 각각 대응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효익이나 비용은, 이러한 대응활동을 세계적인 차원으로 통합하면 사라지게 됨
- 본 논문은 연구추진의 첫 단계에서 이론적인 기업의 세계적 CSR(theoretical firm's global CSR)에 대한 생각을 접고, 실제적인 기업의 구체적 CSR들(actual firm's tangible CSRs)에 대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

- 구체적인 CSR에는 경영자들이 사회적 목적을 위해 윤리적 책임을 확실히 이행하게 하는 구체적인 조치와 방침 또는 활동 등이 포함됨
- 본 논문은 CSR에 대한 견해를 다양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학문적 이해와 더욱 나은 사회를 지향하는 운동을 동시에 전개하기 위하여 5가지의 과제를 제시

가. 재무적 손익(Financial payoff)

- 언제 CSR 관련 연구들이 사회적 성과와 재무적 성과 간의 관계성을 명확하게 확립할 것인가? 본 논문은 저자들의 학문적, 실무적 경험을 통해 그러한 관계성이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다고 함
 - 그러나 현재의 연구 방법론 및 자료 출처로부터는 CSR과 CFP 간에 실제로 깊이 내재된 관계성을 밝혀내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음
 - 현행 방법은 1) 대규모의, 복수업종 자료군, 2) 상이하면서도 명확한 CSR들(예 : 노사관계, 자선행위, 환경경영 등)을 결합하는 통합된 방법, 3) 횡단적(cross-sectional) 관찰 자료나 기껏해야 단기간의 시계열(short-lived time series) 자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그래서 본 논문은 다양한 요소들을 하나로 뭉뚱그리는 것을 피하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연구의 각 요소들의 위치를 바꾸어 동일 업종의 작은 자료군과 다양한 복수의 방법들을 이용할 것과 7~20년 정도의 보다 긴 기간의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함
 - 업종간의 경제적 및 기술적 다양성과 업종내의 자원 및 시장위치의 차이는 동일 업종 내의 기업인 경우에도 상이한 CSR을 수행함으로써 특유의 경쟁 우위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의미
- 또한 본 논문은 기업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거리감이 있는데, 이러한 거리감은 행동, 반응 및 성과변화 사이에 (개념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큰 시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연구의 시계(time horizon)가 그러한 시차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믿고 있음

나. 이해의 균형(Balance)

- 경영자들은 사회 참여의 전략적 논리와 더욱 구체적인 전략적 투자계획 간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있는가?
 - 순현재가치 등 재무관리 기법들은 경영자들에게 현금, 시간, 에너지 등 기업의 부족한 자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확실한 의사결정 기법 및 규칙들을 제공해 주고 있음
 - 전략적 자선행위라는 개념적으로는 직관적인 호소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논리적으로는 CSR을 통해 생성된 자산이나 책임 완화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함 (Godfrey, 2005)
- Sarbanes-Oxley법 이후 경영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재무적 거래의 투명성에 대한 압력이 증가하고 구체적인 재무적 성과에 대한 압력이 끊이지 않는 상황 하에서 경영자들은 CSR을 어떻게 분석하고, 정당화해야 하는가?
 - 경영자들이 기업의 CSR에 대한 투자가 이득이 되는 것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호소력은 있어 보이지만, 과연 동 투자가 실제로 이익을 가져오는가?(Collins and Porras, 1994)
- 학문적 과제의 하나는 기업 자원이 부족한 여건 하에서 CSR에 적합한 보다 분석적이거나 수사적인 도구들을 경영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임
 - 이러한 도구들은 CSR이 기업 내부에서 추진과제로 계속 존재하는 데 중요한 반면, 일단 기업이 사회적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그 필요성이 더욱 증가됨
 - 어떤 CSR 활동에 참여해야 하는가?
 - 기업은 다른 영역의 활동들간에 발생하는 상쇄효과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는데 분석적이고 수사적인 도구들이 부족하다면, 잘 구성된 CSR 관리 팀인 경우라도 어려운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됨
 - 자본이 제한되어 있고, 어떤 사업이 어느 정도의 전략적 자산을 만들어낼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
 - 예를 들어 환경 개선과 독서치료 프로그램(remedial reading programs) 중에서 경영자들은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 또는 제품연구의 강화와 종업원 복지 향상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 현재까지는 경영자들은 “빠격거리는 바퀴”에 단지 기름칠만 하고 있다고 제안(Agle et al., 1999)하고 있고,
 - 기업의 사회참여를 냉소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러한 측정 도구들이 부족하게 되면, 사회참여 결정은 경영자들의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생각에 따라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며, 경영자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CSR 이행은 주주들의 희생으로 얻게 되는 경영진의 특혜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함 (Friedman, 1970; Minnow, 1999)
- 이러한 관점의 차이는 실제적, 잠재적 상쇄효과의 복잡성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해 극복되어야 하는데, 이는 ‘경영자들은 이해관계자들간의 이익과 요구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권고 수준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이루어져야 함

다. 이기적인 이해관계자들(selfish stakeholders)

-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이 (1) 파괴적으로 자기 이익만을 도모하거나 (2) 명백히 사악한 경우 경영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더 중요하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 첫 번째 경우는 미국의 상황과 관련이 있음

- 20세기 중반 미국 최고의 기업이라고 할 수 있었던 General Motors는 최근 주로 노동상황 때문에 대규모의 손실과 잠재적인 파산상태에 직면해 있음
- 그러나 노동협약이 지금은 부담이 되고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실질적으로 이해관계자들에게 다가가는 경영 모델로 각광을 받았음
- 경영자들(이해관계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장기적인 이익을 희생하여 단 한 사람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요구하는) 것을 어떻게 피해 나갈 수 있는가?

□ 두 번째 경우는 국제사회에 적용됨

- 아래에 명시해 놓은 것처럼, 세계의 많은 지역들의 경제시스템은 파워 엘리트들이 자신의 권력과 추진과제의 영속성을 도모하기 위해 소유권과 자원 배분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음
- 그 한 예로, Unocal사는 Yadana Pipeline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동안 이에 대해 가혹한 교훈을 얻었음
 - Unocal사 및 협력업체들은 버마 군대와 파이프라인 루트를 따라 안전을 지켜주는 계약을 체결함
 - 그러자 행동주의자들(activist)은 동 계약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에게 강압적인 조치가 취해지고, 파이프라인과 관련된 강제노역에 지역 주민들이 동원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함
 - Unocal사가 프로젝트 착수 및 운영에 있어 버마군대와의 동업이 효율성 측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이 강력한 이해관계자의 요구를 들어준 것은 강압적인 활동에 가담했다는 비난 때문에 회사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손해를 입히는 것으로 판명될 수 있음

- 경영자들은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또는 의도가 적절한지의 여부를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어떠한 상식이나 공식적인 분석 도구를 이용할 수 있는가?
 - 그리고 부분의 요구사항들이 기업 또는 사회의 장기적 생존 능력의 측면에서 볼 때 적절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는 막강한 이해관계자 집단을 경영자들은 어떻게 피해갈 수 있을 것인가?(Mitchell et al., 1997)
- 본 논문은 이기적인 이해관계자들과의 거래와 관련한 일시적인 압력과 장기적인 결과 모두에 대해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역사적인 학문 내용을 충분히 학습하는 것이 일반원칙 또는 경험칙을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음
 - 이기적인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이론은 총체적인 이해를 크게 향상시켜 줄 것이며, 이런 독특한유형의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직면한 경영자들에게 실제적인 이익(boon)이 될 것임

라. 대체(Substitution)

- 다원적인 글로벌 사회에서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함 상황 하에서, 경영자들은 특정 CSR 활동에 대한 참여로 참여가 부족한 다른 CSR 활동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 Kinder, Lydenburg, Domini는 지역사회 관계, 종업원 관계, 다양성, 제품의 질, 환경 경영, 국제적 이슈, 기업지배구조 등 7가지의 이해관계자별 기준에 기초하여 사회 지수를 개발하였음
 - 이해관계자 집단들이 다양하고, 시간 및 자본 등의 경영 자원이 한정된 상황 하에서, 경영자들은 다른 이해관계자 집단에 대한 투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한 집단에 대한 투자를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는가?

- 미국의 항공산업을 예로 들어 보면, 미국의 대규모 항공사들은 역사적으로 심각한 노동문제로 인해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노조로부터 존경받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음
 - 오히려 이들 기업은 복합산업(collective industry)으로서 다양성 문제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임(Godfrey et al., 2005)
 - 다양성 문제에 호의적이고 CSR에 대한 투자를 가치있게 하는 이해관계자 집단이 있는 반면, 노조는 오로지 비타협적인 파트너로서 존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경영자들은 확실하게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조직화된 노동(노조)을 대신하여 다양성 문제에 대해 긍정적이고 분명한 것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음
- 대체에 대한 논리의 세부사항들은 많은 기업과 사회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두 가지 일을 하도록 유도함
 - 첫째, 학자들은 기업이 행하는 다양한 CSR 활동의 한계 효용에 대한 점점을 포함하여 미시경제학적인 대체의 원칙들과 같은 기법을 엄격하게 사용해야 함
 - 둘째, 연구자들은 이러한 기법들을 개별적인 기업-이해관계자 관계에만 한정하여 사용해야 함
- 사례 연구, 민족지적 방법들(ethnographic methods), 내용 분석 등은 학자들로 하여금 실제 경영자들이 대체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소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하여 중요한 통찰력을 가지는 데 필요한 심층 연구(deep dive)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 방법론이 될 것으로 보임
 - 그러한 대체 효과가 상세하게 모델화되면 이론가들 및 연구자들은 기업 및 산업 차원의 분석으로 돌아와 일반적인 패턴과 원칙들을 탐색하여야 함

마. 세계적인 확장(Global expansion)

- 비서구적이고, 비민주적인 자본주의 제도 하에서 CSR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2005년을 넘어서면서 미국 및 유럽의 많은 기업들은 수익과 이익 증대를 추진하기 위해 영업을 국제적으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이러한 기업들은 성장의 많은 부분이 민주적 서구 자본주의 제도가 새로이 시작되거나 전혀 존재하지 않는 국가 및 지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
 - 실제로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자본주의는 자유와 생활 수준의 향상 보다는 식민주의와 경제적 억압에 대한 기억을 만들어 내고 있음
- 비서구적, 비민주적 자본주의 국가들의 개별적 경험과 지적인 전통에 대처하기 위해 CSR모델들은 어떻게 변화해야만 하는가?
- 본 논문에서 구체적인 해답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표1>의 양 극단의 입장인 “주주 자본주의”, “기업 시민정신” 등이 너무 엄격하게 공식화되어 있어서 CSR과 관련된 기업 행동, 정부 정책, 학문적인 이론화 등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음
 - 증권시장이 발달되지 못하고, 소유와 지배를 분리시키는 효과적인 법적 제도가 없는 국가나 지역 또는 아직도 강력한 지배엘리트가 소유권을 거의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 소유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기업 및 사회 정책을 쓰게 되면 그 사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의 권리를 계속해서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이와 유사하게 주주 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에서 요구하는 민영화와 건전 시장의 개발은 피해를 입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보복을 야기시켜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가 파괴되고, 자본의 개발과 자유로운 흐름이 봉쇄될 수도 있음

- 본 논문에서는 기업 시민정신 패러다임(business citizenship paradigm) 또한 서구의, 실제로는 고전적인 서구의, 철학적 기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주춤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기업 시민정신은 원래 아리스토텔레스와 키케로에 의해서 발전된 시민 정신과 관대함의 학설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상은 대부분의 서구사회에서 당연한 특성으로 널리 인정되고 있음
- 본 논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에 대한 의무 사상이나 관대함을 시민정신으로 보는 키케로의 견해가 가족과 여성에 대한 의무와 검약을 강조 (Chan, 1963)하는 유교의 맥락에서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궁금해 함
 - 그러한 철학적 차이가 기업 시민정신 모델의 핵심을 결정짓는 요소가 되어서는 안되지만,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어서도 안됨
 - 중대한 연구 과제는 기업시민정신 및 주주 자본주의 모델들을 비서구적인 철학, 경제학, 제도에 관한 언어와 논리로 바꾸고, 다양한 지적인 전통 안에서 유사함뿐만 아니라 학자들과의 개별적인 연결성을 발견하고 이용하는 데 있음

3. 결론

- 앞에서 제시한 연구 과제들은, 단일 분야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포럼을 통해 초기 단계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윤리적, 사회적 책임에 대한 많은 다른 분과 학문의 연구자들로부터 평가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별함
 - 본 논문은, 특정 이슈나 모델을 지지하지 않고, 더욱 폭넓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참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요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논문과 다름
- 만약 모든 특정한 이슈 및 논문이 이와 같다면, 인간의 총체적 지식은 향상되지 못할 수도 있음

○ 그러나 현재 상태를 평가하고, 도전적인 문제들을 제기하고, 자신의
편견과 선호를 제시하는 이와 같은 포럼이 없다면, 인간의 총체적 지
식은 정체되고, 골육상쟁(internecine warfare)의 상태로 추락하고 말
것임

□ 저자들은 본 논문이 학문을 발전시키고, 학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함

II. 중국이 추진중인 부패와의 전쟁*

* 중국 청화대학 부설 ‘반부패 및 지배구조 연구센터’(Anti-Corruption and Governance Research Center)의 주임연구원 Cheng Wenhao(程文浩)가 국제적인 비영리단체인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BSR)의 『*Leading Perspective*』誌 2006년 여름호에 게재한 “China’s Ongoing War Against Business Corruption”을 번역, 정리한 것임

-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중국의 반부패 운동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음
 - 예전에는 반부패운동이 공공분야의 뇌물 및 부패 문제에만 주력하여 왔으나 이제는 그 범위가 확대되어 민간분야의 반부패 문제를 우선적 과제로 삼고 있음
- 그래서 현재 중국의 반부패 운동은 뇌물을 받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다른 기업에 뇌물을 제공한 기업도 반부패 운동의 목표로 삼고 있음
 - 중국의 반부패 운동 범위 확대는 중국 내부의 기업투자환경에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임
- 중국에서 ‘기업의 뇌물수수’(business bribery)라는 말은 기업 및 기업 종사자가 상품과 서비스를 매매하기 위하여 수수하는 뇌물을 의미함
 - 중국은 이 문제를 10년 넘게 다루어왔는데, 1993년에는 ‘反不公正競爭法’(Law Against Unfair Competition)을 통과시켰으며, 1996년에는 ‘반부패 및 뇌물 규정’(Provisional Anti-Corruption & Bribery regulation)을 선포하였음
 - 이 2가지 법규는 기업의 뇌물수수 및 기타 부적절한 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형법에서도 뇌물수수에 대하여 강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기업의 뇌물수수 행위가 은폐하려는 속성이 있는데다 법 집행제도마저 취약하여 중국 정부 당국이 기업의 뇌물수수 문제를 뿌리 뽑기가 매우 어려웠음
 - 더욱이 기업의 뇌물수수와 인적 네트워크 간에는 반드시 명확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도 않으며 종종 회색지대가 존재하고 있음
- 사실 나라마다 뇌물수수에 대한 정의가 다양한데, 예컨대, 중국의 법률에 의하면, 정부 공무원은(가족도 포함)이 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으면 부정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그러나 개인이 아닌 정부부처나 기관이 계약을 승인해준 대가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경우에는 개인 어느 누구도 기소하기 어렵게 되어 있음
- 중국은 경제성장의 속도가 빨라지고 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특히 의료, 부동산, 금융 및 건설 부문에서 발생하는 기업의 뇌물수수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음
 - 기업의 뇌물수수 문제는 중국의 경제성장과 사회안정에 대한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는데, 이는 시장제도가 원활하게 기능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심대한 손해를 입히고 일반 소비자들의 이익도 해치고 있기 때문임
- 최근 수년간 많은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보장받기 위하여 중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것 때문에 자국의 정부로부터 벌금형을 받았음
 - 이러한 결과로 중국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자들의 문제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되었음
 - 2006년 초 중국은 공공분야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하면서도 기업부문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공식적인 반부패 운동의 우선과제로 채택하였음

- 현재 중국 정부는 정상적인 기업 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공무원의 뇌물 수수뿐만 아니라 기업체와 개인 간의 뇌물수수도 반부패 대상의 목표로 삼고 있음
- 중국 정부는 업종과 부문에 따라 다양한 기업의 뇌물방지 관행을 전국적으로 통합하기 위하여 ‘중앙 기업뇌물방지 선도 그룹’(Central Anti-Business Bribery Leading Group)을 구성하였으며, 동 그룹에는 20명 이상의 정부부처 소속 장관급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음
 - 동 그룹은 건설, 토지 이용, 재산권 거래, 의약품 조달 및 판매, 정부조달 등의 문제가 많은 부문에 대한 부패와의 전쟁에 전력해오고 있음
-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정부는 기업의 뇌물방지를 위한 각자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업의 뇌물수수 범죄를 더 잘 처리하기 위하여 형법의 관련 조항도 개정될 것으로 보임
 - 기업의 뇌물방지 이는 정부 정책, 법률 및 집행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다각적으로 추진될 것임
 - 예컨대, 상무부는 ‘기업신용에 대한 통합감독시스템’(Union Supervision System on Business Credit)을 이미 가동시켰고, 2006년에는 ‘국가공상산업국’(State Industry and Commercial Bureau)은 의약품 판매업에서 발생하는 뇌물 문제를 담당할 것이며, ‘국가감사국’(State Audit Bureau)은 기업의 뇌물수수 문제에 치중할 것임
- 과거에는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뇌물을 제공한 사람보다 통상적으로 더욱 강한 처벌을 받았지만, 현재 중국의 법 집행 당국들은 기업의 뇌물 거래 수요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뇌물제공에 따른 대가가 크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 2006.1월 중국의 검찰당국은 ‘뇌물제공자 정보 데이터베이스’(bribers information database)를 공개하였음

-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면 뇌물 제공으로 기소된 적이 있는 기업체나 개인은 향후 정부와의 계약에 입찰 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임
- 그래서 이 시스템은 뇌물제공자가 과거의 불법적 행위로 인하여 치러야 할 잠재적 대가를 크게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임
- 중국은 현재 기업의 뇌물방지를 위해 매우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기업의 뇌물방지 운동은 어느 정도 목표달성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음
 - 현재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기업의 반부패 관련 조항이 포함된 형법이 새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됨
 - 아울러 일부 학자들은 하나로 통일된 기업뇌물방지법(a unified Law of Anti-Business-Bribery)을 즉시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가까운 미래에 기업 부패를 통제하는 것이 중국의 반부패운동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음
 - 그러한 노력은 직접적으로는 중국 기업과 외국계 기업 모두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공정하고 건전한 중국의 시장 환경을 조성한 데에 기여할 것임

III.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정부 참여*

* 국제적인 비영리단체인 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BSR)의 CEO인 Aron Cramer가 BSR의 『*Leading Perspectives*』誌 2006년 겨울호에 게재한 "Government Engagement for Successful CSR"을 번역, 정리한 것임

1. 개 요

- 워싱턴 DC에서 열려 최근에 종료된 BSR 컨퍼런스에서 논의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정부정책의 만남(intersection)”은 『*Leading Perspectives*』誌의 발간을 위한 시의 적절하고 절실히 필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동 주제의 시의 적절성은 BSR 컨퍼런스가 맞춘 절묘한 타이밍을 넘어서고 있으며, 기업들에게 CSR을 이전보다 훨씬 더 긴급한 문제로 만드는 수많은 경향들이 한데 모아지고 있음
- 대부분의 현대 “CSR 운동”은 기업이 사회적, 환경적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서 기회와 책임을 동시에 가진다는 원칙을 확립하는 데 주력하여 왔으며, 기업이 정부와 협력하기 보다는 정부와는 별도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

2. 기업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가?(What's In It for Business?)

-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 대한 견해들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들이 상당히 있음
 - 2005년 일부 우량 기업들은 최저임금(Wal-Mart), 기후(GE), 인권(Carrefour), 근로 기준(Nike) 등에 관해 정부의 조치를 요구하였음
 -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군가가 Bob Dylan의 노래 가사 “바람이 부는 방향을 말하는 것은 일기예보자의 몫이 아니다”를 상기시켰음

- 2005년 여름 BSR이 CSR의 다음 물결을 가장 잘 형성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고자 북미, 유럽, 아시아의 15개 기업들과 회의를 개최했을 때, ‘공공정책’이 향후 CSR 형태의 중요한 특징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고도 소리 높게 주장되었음
 - 이것은 예상된 결과가 아니었는데, 한 기업의 참가자는 더욱더 철저하게 정부와 싸워야 한다고 주장하려다가 자제하면서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되다니 믿을 수 없다.”고 말하였음
- 물론 세상이 변화였으며, CSR과 관련된 논의에서 정부를 강력한 상대가 아닌 척하는 것은 항상 부자연스러운 일이었음
- CSR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완전히 인정되고, 공공정책이 CSR 운동을 어떻게 촉진시킬 수 있는지를 심사숙고한 전략들이 개발될 때 CSR에 대한 기업의 접근방식은 완성되고, 더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임
- 기업들이 새로운 관점에서 정부의 역할을 고려하게 되면 기업들이 더욱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된 데에는 분명 여러가지의 이유가 있음
 - 1) 지속가능성과 관련한 많은 중요한 문제들을 기업 혼자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기업은 등 떠밀려 리더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점점 더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음
 - 2) 오직 정부만이 더 많은 기업들을 주요 이슈에 참여토록 하는 데 필요한 “공정 경쟁의 장”을 확립하고 시행할 수 있고, 가장 적극적인 기업들에게 보상할 수 있으며,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노력들을 피하도록 도와줄 수 있음
 - 3) 정부가 일정 역할을 담당하지 않는다면, CSR은 복잡한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동떨어진 “모범규준(Best Practice)” 사례들만 만들어 낼 위험성이 있음
 - 4) 기업이 특정 이슈들을 다루거나 사실상의 규칙(de facto rule) 설정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기업계를 포함한 수많은 분야에서 제기되어 왔음

5) 이해관계자 집단들은 기업들의 CSR 실천 선언과 실제 노력간에 인식된 차이, 로비와 정치적 기부를 통해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기업의 노력 등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음

○ 잘 하면, 이러한 차이는 조정력의 부족 정도로 그치겠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기업의 유효성과 평판을 해치는 고의적인 불일치로 간주될 것임

□ 기업이 상업적 이익과 더 넓은 사회적, 환경적 목표를 조화시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간의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많이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보상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하고, 좋은 모범사례들을 표준화하기 위해 정부와 협력할 필요가 있음

3. 참여의 근거(A Basis for Engagement)

□ 정부는 의제 설정, 회의 소집, 공식적인 규칙의 제정 및 집행, 자원의 집중 및 공급에 기업을 참여시키고 있음

○ 이러한 활동들은 책임있는 기업의 실천사례들이 더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 최근 몇 년 동안 이러한 활동들은 큰 효과가 있어서 의무사항의 보고, 갈등 감소를 위한 공동 노력, 환경현안에 대한 시장 중심의 해결책 등을 얻을 수 있었음

□ 다가오는 세대에 기업이 직면하게 될 이슈들은 복잡한데, 급격한 인구통계학적 변화, 생명공학, 전염병 공포에 따른 보건학의 정의 변화 등의 예를 들 수 있음

○ 시장 참가자들로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헤쳐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시장이 혼자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구비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 그동안 대부분의 정부들은 정부가 어떻게 기업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았음

- 미국의 경우 감사원(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의 최근 보고서는 수많은 이니셔티브를 보여 주고 있는데, 어느 것도 총체적 접근방식으로 엮여 있지 않았음
 - 2005년 중국 정부는 “중국적 특성을 가진 CSR(CSR with Chinese characteristics)”에 대한 중요한 논의에 참여했으나, 2005년 12월 중국에서 개최된 UN Global Compact 정상회의에서는 동 의제에 대해 겨우 열의를 보여 주는 시늉만 하였음
 - 유럽위원회의 경우, “리스본 의제”*(Lisbon Agenda)의 추진을 위해 CSR에 관해 가장 적극적인 정책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보여졌던 유럽위원회는 EU의 미래 발전에 관한 광범위한 현안들이 우선적으로 채택됨에 따라 중국과 비슷하게 CSR 추진에서 다소 후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음
 - * EU가 2010년까지 미국을 추월해 EU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경쟁력 있는 지식기반 경제권으로 만들기 위해 2000년 3월 리스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것으로, 크게 경제개혁, 고용증대 및 사회통합의 3대 분야로 구분되어 추진되었음
 - 가장 최근에는 영국 정부가 기업들의 중요한 비재무적 사항 보고를 새로운 요건으로 요구하도록 되어 있던 ‘기업 운영 및 재무 보고서’(Operating and Financial Review)의 의무적 사항을 누락시켜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었음
- 정부와 협력하는 것에 대해 기업의 관심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정부는 그 논의로부터 후퇴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민간 부문이 CSR 논의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의 참여를 민간 부문이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

4. BSR과 공공정책(BSR and Public Policy)

- BSR이 기업으로 하여금 더욱 책임있는 활동을 추진토록 하기 위한 역할을 몇 마디로 정리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임
 - 기업들의 자발적인 행동이 CSR을 위한 노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BSR로서도 사회적, 환경적 진보를 가져다 주는 경제적 발전을 기업을 통하여 이루려고 하는 핵심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음
 - 이와 동시에 BSR은 기업들이 공공부문과 협력할 때 CSR 활동을 추구해야 할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함
- BSR이 특정한 정책 문제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지만, 회원 기업들과 함께하는 BSR의 업무를 고려해 볼 때 정부와 협력해야 할지의 여부에 대해 중립을 유지하는 것은 그다지 매력적인 일이 아닌 것이 확실함
 - 이것은 지난 2년 동안 BSR이 (종종 기업들의 직접적인 요청에 의해서) 수익 투명성, 근로 기준, 지속가능한 농업 등 직간접적으로 정부와 관련이 있는 이니셔티브 및 프로젝트에 많이 참여해왔다는 것을 의미함
 - 필자는, 이러한 진전이 이 분야가 성숙해 나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데, CSR에 대한 기업 및 정부의 노력이 가끔 벌어지고 있는 자발적 이니셔티브와 의무적 이니셔티브간의 상대적 장점에 대한 무익한 논쟁을 넘어서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
- 정부와 함께 협력할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은 지역, 국가, 국제적 수준의 공공정책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있는 자원들을 허비하는 것을 의미함
 -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로 인하여 의도는 좋지만 불충분한 상태로 남아 있을 고립적이고, 단편적인 이니셔티브들과 계속해서 맞서야 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함

IV.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

1. 제일모직 윤리경영 사례*

* 2007. 1. 22일 제일모직이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임

《삼성 가치체계》



“인재와 기술을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여 인류사회에 공헌한다”

We will devote our human resources and technology to create superior products and services there by contributing to a better global society



인재제일
People



최고지향
Excellence



변화선도
Change



정도경영
Integrity



상생추구
Co - Prosperity



원칙 1. **법과 윤리**를 준수한다. We comply with laws and ethical standards

원칙 2. 깨끗한 **조직문화**를 유지한다 We maintain a clean organizational culture

원칙 3. **고객 · 주주 · 종업원**을 존중한다 We respect customers, shareholders and employees

원칙 4. **환경 · 안전 · 건강**을 중시한다 We care for the environment, health and safety

원칙 5. **글로벌 기업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We are a socially responsible corporate citizen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실천》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 경영 투명성을 높여 정도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 Compliance Program)을 지난 2006년 도입해 운영하고 있음

- *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 사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담합이나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운영하는 것을 말함
- 2006년 7월 이사회 승인을 거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관련 시스템과 시행안을 마련하고, 9월 1일 대표이사 메시지를 통해 정식으로 도입을 공표함

◎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실천

-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자체 준수수칙을 제정하고, 임직원에게는 공정거래법 준수를 위한 행동 기준이 제시된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과 핸드북을 배포해 프로그램의 개념과 실천 방안을 공유
- 또한 공정 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공정거래 법규 관련 임직원 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구축한 사내 법무포털 시스템에 공정거래 자율준수 관련 자료를 축적해 전 임직원이 실시간으로 활용하도록 지원

《사회공헌 활동》

◎ 고객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 2006년 창립 52주년을 '기부문화 확산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아름다운 가게'와 공동으로 고객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을 시작
 - o 2006년 9월 14일 서울시 청계광장에서 열린 '나눔이 만드는 희망세상'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하고, 아름다운 재단과 손잡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연중 공익 캠페인을 펼친다고 발표하였으며,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임직원 기증품을 판매하는 '아름다운 가게'를 개최

- 일반 고객과 가장 가까운 패션사업의 특성을 살려 빈폴 의류 제품에 '아름다운 가게' 소개 문구와 물품 기증 연락처를 담은 태그(나눔이 만드는 희망세상 물품기증은 1577-1113)를 부착해 고객이 직접 물품기증에 참여하게 함
- '나눔이 만드는 희망세상' 캠페인은 그동안 기업이 시민단체를 후원하는 일회성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의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직접 사회공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주는 고객참여형 사회공헌 활동의 새로운 역할모델을 제시하였음

◎ 봉사활동 사업장별 특화, 체계적인 지원으로 전 임직원 참여 유도

- 지난 1994년 그룹의 사회공헌활동 본격 시작에 발맞춰 '나눔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는데,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문화 조성을 사회공헌활동 추진에 있어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특히 2006년 4월에는 기존의 사회 봉사단 조직을 4개 사업장별로 나눠 지역 특성을 반영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자원봉사센터를 각각 신설했으며, 매월 셋째 주 목요일을 자원봉사의 날로 정해 적극적인 참여 확대를 유도하고 있음
- 아울러 134개 팀 단위로 봉사팀을 구성해 각 팀별로 자원봉사 리더를 임명함으로써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조직을 구성함
- 2006년 현재 제일모직은 총 61개 복지시설과 자매결연을 맺어 지역 밀착형 임직원 봉사 활동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전 임직원의 73% 이상이 참여하고 있는 '사랑의 성금' 제도를 통해 매년 1억원 이상의 기금을 사회시설에 기부하고 있음
- 매년 9월 창립기념일을 전후해서는 전사적으로 자원봉사주간을 선포하고 창립기념 행사를 최소화해 남은 경비를 사회공헌 예산으로 활용하고 있음

◎ 사회공헌활동 향후 계획

- 제일모직은 2006년 사회봉사단 조직 확대 개편에 따라 봉사활동의 주요 추진 과제도 전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나갈 방침
- 이를 위해 봉사활동 시간을 개인 분기별 1회, 5시간 이상으로 규정 화해 자원봉사활동의 정착을 유도하고, 체계적인 활동 관리를 위한 'e-봉사도우미'를 사내 전산망에 오픈해 개인 및 팀별 봉사활동 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고 있음
- 제일모직은 지역밀착형 봉사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각 지역 교육기관과 연계한 사업장 견학과 개방 등으로 지역사회와 융화를 추진하고, 가족 참여형 봉사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 참여율이 높은 임직원 성금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매칭 그랜트(matching grant : 임직원들이 봉사활동 및 공익사업을 위해 비영리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기부금을 내면 회사도 이 금액만큼 1대1로 매진해 후원금을 출연하는 사회공헌활동) 제도를 활성화해 수혜 대상을 늘려나갈 방침

《윤리경영 성과》

- 2006년 5월 : 대한민국 마케팅 대상 최고경영자상 수상
- 2006년 10월 : 2006 국가고객만족도(NISI) 남성정장 제조업부문 1위 인증(주최: 한국생산성본부)
- 2006년 12월 : 제16회 '경제정의기업상 大賞' 수상

2. 한미약품의 윤리경영 사례*

* 2007. 1. 22일 한미약품이 국가청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임

《윤리 경영이념》

- ◎ 한미약품은 2003년부터 '윤리'를 구성원들의 최우선 원칙으로 정해 고객 존중의 가치를 실현시키고 투명한 기업, 고객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의 기업상을 구현해가고 있음
 - 협력사와 공존공영하고 경쟁사와는 공정한 경쟁을 추구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켜 가는 제약기업으로서의 사명과 책임의식을 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 구축》

◎ 윤리실천 서약서 제출 의무화

- 투명성이 기업생존의 필수 조건 중의 하나임을 강조하는 한미약품은 윤리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다짐의 일환으로 모든 임직원이 업무와 관계되는 일체의 금품과 향응을 주고 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매년 초 의무적으로 회사에 제출

◎ 윤리경영위원회 및 전사적 윤리강령 운영

- 한미약품은 윤리경영을 구체적으로 실현시켜나가기 위해 '윤리경영 위원회' 및 '윤리강령'을 운영해 오고 있음
 - 윤리경영위원회는 회사의 임원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객은 물론 계열사, 협력사의 제언도 받아들이고 있음
 - 윤리강령은 기본 윤리책무, 고객만족, 정도경영, 국가 사회에 대한 의무 등의 조항으로 구성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기업경영을 위한 기초 덕목으로 삼고 있음

◎ 연말연시 선물안주고 안받기 운동

- 2003년 윤리경영 선포 이후 명절이나 연말연시에 협력업체와 금품이나 선물을 상호 교환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있음

◎ 관계처 및 협력업체에 관한 별도 윤리강령 운영

- 1997년부터 관계처 및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별도의 윤리강령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조리 및 상호 금품제공 금지 등 투명한 관계 구축을 위한 윤리강령을 지켜나가기 위해 연 2회 관계처 및 협력업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음

《사회공헌활동을 통한 윤리경영 실천》

1. 문화예술 분야

◎ 공익재단 설립 통한국민 삶의 질 향상

-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념을 문화사업의 형태를 통해 실현하기 위해 공익재단인 '한미문화예술재단'을 지난 2002년 설립했고, 2003년 1월 '한미사진미술관'을 개관하였음
- o '한미사진미술관'은 국내 최초의 정부공인 사진전문 미술관으로서, 사진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과 사진영상물 발굴 및 사료의 편찬 등으로 한국 사진 문화 예술의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음
- o 개관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진전문미술관이라는 전문성으로 「2004 서울세계박물관대회(ICOM : The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2004.10.2~10.8)의 문화탐방 프로그램에 선정되기도 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사진미술관으로 인정받기도 하였음

2. 사회복지 분야

◎ 사랑의 헌혈활동 & 가평 꽃동네 방문

- 한미약품은 국내 제약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지난 1981년부터 '사랑의 헌혈운동'을 연간 캠페인으로 26년간 진행해 오고 있음
 - o 지난 81년부터 26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시무식이 끝난 후 '사랑의 헌혈운동' 행사를 벌여 '이웃 사랑'을 실천해왔고, 해를 거듭할수록 사원들의 참여가 늘어나고 있음
 - o 본사뿐만 아니라 계열회사까지 동참하는 헌혈운동은 '생명존중'의 기업이념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한미약품 특유의 캠페인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2002년 10월부터는 신입영업사원들이 가평 꽃동네를 방문해 1박2일 동안 무의탁노인, 정신지체아들을 도우며 자선봉사 활동을 해오고 있음

◎ 사내 여직원들의 모임인 '청록회' 봉사활동

- 1980년 결성한 회사 여직원의 모임인 '청록회'는 창설 이후 매년 연말 주위의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일일찻집을 열어 왔으며, 회사 모든 여직원들이 일일 찻집을 열어 번 수익금을 주변 양로원, 고아원 등에 기증하는 등 지속적인 자선활동을 전개
 - o 또한, 한 달에 한번씩 토요일에 노량진 성로원 아기집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하고, 회사에서 청록회로 지원해준 돈이나 일일찻집으로 번 수익금 중 일부로 성로원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

◎ 북한 어린이 돕기 관련

- 1997년 어린이 영양제를 어린이 의약품 지원본부를 통해 북한에 의약품을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한국제약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각 사회단체를 통해 해마다 의약품을 지원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의약품 지원활동은 지속해 갈 예정

◎ 희귀 난치성질환 환자 돕기

- 한미약품은 2005년 8월 희귀성 난치질환환자를 돕기 위해 한국 희귀성 난치 질환연합회에 1억원을 전달했으며 이후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계획 중임

2. 교육 학술 분야

◎ 의·약학계 지원 활동

- 한미약품은 의학계의 발전을 위해 한국의학원, 유전과학연구소 등 의학 연구기관을 위시하여 각 의과대학 및 병원 등의 의학 발전기금뿐 아니라 각종 학회 등에도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펼쳐왔으며, 3개의 의료상도 2001년과 2002년, 그리고 2006년에 제정하였음
 - 2001년에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편으로 의사들이 환자를 대하면서 느끼는 인간적인 교감을 직접 수기형태로 응모하는 '한미수필문학상'을 청년의사와 공동으로 제정
 - 2002년에는 서울시의사회와 공동으로 '한미 참 의료인상'을 제정하였는데, 이 상은 숭고한 봉사정신으로 보건 의료 사업에 헌신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봉사함으로써 사회를 밝게 만드는 의료인들에게 수여해 오고 있음
 - 2006년에는 전국중소병원협의회와 공동으로 '한미 봉사상'을 제정해 전국 중소병원 발전에 공헌했을 뿐 아니라 밝은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게 하고 있음

《윤리경영 성과》

- 2003년 4월 : 제2회 공정거래의 날 공정거래위원장상 수상
- 2004년 12월 :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기업상 (주최:한국경영인협회)
- 2005년 12월 : 2005 가장 신뢰받는 기업상 (주최:한국경영인협회)
- 2006년 12월 : 제16회 경제정의기업상 (식약부문)

V. 국내 윤리경영 동향

【 기업 관련 】

◎ 대한제당, 윤리경영 선포식 개최(1.3)

- 대한제당은 윤리강령 발표를 통해 향후 진취적이고 효율적인 경영 활동으로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국내외 모든 법규와 시장 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솔선수범할 것임을 밝혔다
- 또한 주주 및 투자자에 대한 자세 등 6개 항목의 20개 세부 실천 사항을 채택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전하고 공정한 기업 문화 창달에 노력할 것을 다짐

◎ S-Oil, '사회봉사단' 출범(1.5)

- S-Oil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실천해 온 나눔경영을 더욱 강하게 확산시키기 위해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조직된 '에쓰-오일 사회봉사단'을 출범시켰음
- 총 750명으로 출범한 사회봉사단은 서울, 울산 등 6개 지역봉사단으로 구성됐으며,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수립,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동社は 자원봉사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 지원 등을 통해 활동 지원은 물론 임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가정신에 관한 인식 조사' 발표(1.10)

- 대한상공회의소가 현직 CEO 100명(대기업 50명, 중소기업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가정신에 관한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가 기업가정신이 위축돼 있다고 말하였고, '활발하다'는 응답은 전체의 18%에 불과

- 응답자들은 기업가정신이 위축된 가장 큰 요인으로 반기업정서(35%)를 꼽았고, 이어 정부규제(24%), 노사갈등(20%), 기업인들의 위험 감수 의지 부족(15%), 단기실적 중시 경영 형태(6%) 등을 지적
- 한편 기업가정신을 회복하기 위한 과제로 '법과 제도를 기업친화형으로 정비해야 한다(52%)'를 최우선으로 들었으며, 이 밖에 親 기업 분위기 조성(26%), 기업가정신 재무장(15%), 기업 氣 살리기 캠페인 전개(7%) 등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남

◎ 경희 비즈니스 포럼, '유(U·You·柔)'를 올해 경영화두로 발표(1.15)

- 경희대 경영대 교수 60여 명은 '경희 비즈니스 포럼'을 열고 올해 경영 화두는 윤리경영, 감성경영, 유비쿼터스 경영, 컨버전스(융합) 경영 등 4가지로 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로 '유(U·You·柔)경영'이라고 밝혔음
- 윤리경영에서 '윤'은 '유+ ㄴ', 융합경영에서 '융'은 '유+ ㅇ', 감성경영을 대표할 수 있는 한자는 '부드러울 유(柔)'자로 표현될 수 있으며, 또 영어 U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첫 자로 Unify(융합) 첫자에 해당함
- 특히 타임지가 올해 대표적 인물로 'You'를 선정했던 것처럼 최고경영자들은 올해 디지털 시대에 진정한 주인공인 'You'를 기업경영 화두로 삼아 경쟁력 향상을 위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함

◎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2006년도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대회'(1.17)

-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는 '2006년도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 대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보건의료분야에서 2006년 한 해 가장 큰 활동성과는 '의약품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자율공동규약'의 제정이라고 발표하였음

- 동 협의회는 2006년도 중 ‘공공부문의 부패방지체계 개선 및 투명성 교육 강화’, ‘의약품 등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 ‘건강보험청구 투명성 강화’, ‘보건의료기관의 투명경영실천’, ‘보건의료단체 및 기관의 윤리경영 강화’ 등 5대 추진과제와 14개의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실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보고
- o 그중 가장 큰 활동성과는 '의약품등의 거래에 관한 보건의료분야 자율 공동규약'의 제정인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하여 동 협의회는 보건의료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2007년도 사업계획의 이행과 특히 공동자율규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과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각 단체의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 한국철도공사 충북지사, 직무청렴계약제 도입(1.16)

- 한국철도공사 충북지사는 전국 지사 중 처음으로 직무청렴계약제를 도입하여 지사장, 팀장, 사업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패방지 척결을 위한 직무청렴계약제 체결식’을 갖고 2,200여명의 직원들이 서명한 계약서를 교환하였음
- 직무청렴계약제 시행으로 경영 최일선의 책임자인 팀장, 그룹역장, 사업소장 등 충북지사 전 팀원은 직무와 관련 금품수수, 향응 접대를 받았을 경우에는 직위해제, 징계회부 등 인사조치와 성과급 반납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됨

◎ 대한상공회의소, 기업호감도 조사 결과 발표(1.18)

- 대한상공회의소가 현대경제연구원과 함께 2006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한 ‘2006년 하반기 기업호감도지수(CFI)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호감도지수가 100점 만점에 50.2점으로 집계돼 그 동안의 부정적인 기업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지난 2003년 12월 첫 조사 때의 38.2점보다 12점 높아진 것으로 반기별로 실시된 7차례의 조사 중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으며, 특히 지난 3년간 기업호감지수가 조금씩 높아졌음
- 또한 기업활동의 우선순위가 '이윤창출'이라는 의견도 첫 조사 때의 53.5%에서 57.3%로 높아지고, '사회 환원'이라는 의견은 46.5%에서 42.7%로 낮아져 기업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기업에 호감이 가는 이유로는 국가경제에 기여(42.3%), 일자리 제공(24.3%), 국위 선양(20.9%) 등의 순으로 꼽았으며, 반대로 호감이 가지 않는 이유로는 분식회계 등 비윤리경영(29.2%), 경영권 세습 등 족벌 경영(22.4%), 근로자 희생 강요(15.6%)의 순으로 들었음
- 한편 기업에 대한 평가와 기대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으며, 우리나라의 반 기업 정서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시각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음
 - '우리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데는 기업의 역할이 매우 컸다'는데 대해 응답자의 89.8%가 공감하고 있었으며, '우리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의지하고 기대해야 하는 주체는 기업이다'는 질문에 대해서도 76.1%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음
- 이번 조사에서 국민들이 기업에 요구하는 첫 번째 과제는 '고용창출 확대'(59.7%)로 나타나 청년 실업난, 조기 퇴직 등의 해소를 위해 기업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점을 시사했으며, 다음으로는 '경영 투명성 제고'(19.3%), '사회공헌 활동'(10.8%), '정경유착 단절'(10.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음
- 아울러 정부가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로는 노사 안정이 35.2%로 가장 많이 꼽혔으며, 기술개발 지원 (22.5%), 규제 완화'(18.2%), 정경유착 근절(12.5%), 금융세제 지원 (11.3%) 등이 뒤를 이었음

◎ SK증권, 직무윤리 실천 선포(1.19)

- SK증권은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윤리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직무윤리실천 선포식`을 개최
 - o SK증권은 지난 2004년 3월부터 윤리실천사무국 주관으로 매년 1회 윤리실천 서약식을 시행해 오고 있음
 - o 기존의 구호성 윤리경영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실행 가이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현업에 있는 직원들과의 거리감을 좁히는 데 주안점을 둠
- 향후 동社は 직원의 직무를 16개 세부로 나누고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해, 매주 단위로 그 실천 여부를 자가진단 할 계획이며, 대상 직무는 계속 세분화해 직원의 이동이나 보직 발령 시에 업무인수인계서로 활용할 계획

◎ 한국철도공사 대전지사, 부패척결 결의대회 개최(1.19)

- 한국철도공사 대전지사는 청렴도 향상 및 부정부패, 부조리 근절을 위한 전기분야 '부패척결 결의대회'를 가짐
 - o 이번 결의대회는 지사장을 포함한 전기분야 직원 50여명이 '부패 방지교육'과 더불어 윤리경영 서약서 작성, 실천구호 제창, 청렴도 향상, 부패방지 세부실천 계획을 토론하는 것으로 진행됨

◎ 제주도 21개 경제관련 단체, '제주기업사랑협의회' 발족(1.24)

- 제주도 내 민간단체 중심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 확산과 기업사랑 운동을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도내 경제관련 단체와 연구소 등이 나서 '제주기업사랑협의회'를 구성, 발족

- 제주기업사랑협의회는 기업애로신고센터 운영과 지역 현안문제 및 업계 애로사항 건의, 기업사랑 토론회·포럼 활성화,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신노사문화 창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기로 함
- o 또한 부패추방 운동과 투명사회 협약 실천, 윤리경영 결의대회 개최, 친환경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집중시켜 나가기로 함

◎ 금호건설, 협력회사 CEO 어울림 간담회 개최(1.25)

- 금호건설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30명과 협력회사 대표이사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력회사 CEO 어울림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o 동 행사는 구매방침 소개, 협력회사 등록증 전달식, 윤리경영 동참 협약서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됨

【 정부 관련 】

◎ 환경부, 산업폐수의 독성 배출허용 기준 도입(1.4)

- 환경부는 물벼룩을 이용한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하는 수질 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4일 입법예고함
- o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기존 개별물질 배출허용기준과 달리 전체 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로써, 산업폐수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이 물고기, 물벼룩 등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하여 기준으로 설정함
- o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산업발달에 따라 급증하는 화학물질의 독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70년대부터 생물체를 이용하여 폐수를 관리하여 왔으며, 우리나라 또한 사용하는 화학물질이 4만 여종에 이르고 매년 400여종이 증가하고 있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유해물질 관리가 시급한 실정

-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은 물벼룩에 미치는 급성 독성시험으로 측정하게 되며,
 - o 화학제품 제조업 등 유해화학물질을 다종 또는 다량 사용하는 36개 업종(전체 82개 업종)에 한정하여 적용하되, 2010년부터 사업장 규모 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됨
- 입법예고를 통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보다 폭넓게 반영할 예정이며, 제도 홍보와 산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산업폐수 생태독성 저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

◎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 강화(1.5)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음
 - o 종전에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가 위반내용을 자진 시정하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하거나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음
 - 이로 인해 대금 조기결제 유도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원사업자의 법준수 의지약화 등을 초래하여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저해요인으로도 작용
 - o 이에 따라 앞으로 불공정거래 등 공적 질서 침해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반사업자가 위반내용을 자진 시정하거나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하더라도 위반사건을 끝까지 조사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집행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음

◎ 공정거래위원회, 설날 전 하도급대금 적기지급을 위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1.23)

－ 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2.18)을 앞두고 임금지급 등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소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신속히 대처하고,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기 위하여 지역별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1.22~2.15 : 25일간)

○ 동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는 설날 전에 적기 대금지급 등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임

－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하여 회원사(원사업자)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 내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주지시킬 것을 협조 요청하였음

*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건설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전자산업진흥회, 한국조선공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환경부·중소기업청, REACH 대응 순회세미나 개최(1.22~1.26)

－ 환경부와 중소기업청은 공동으로 '07.6.1부터 본격 시행되는 EU(유럽 연합)의 신(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수출중소기업이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 인천, 경기 등 10개 지역을 순회하며 REACH 대응 세미나를 개최(1.22~1.26: 5일간)

○ 신(新)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는 '06.12.18 확정되어 '07.6.1.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 기존 화학물질 관리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EU에서 제조·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화학물질을 사용하여 만든 완제품 포함)에 대해 산업계가 직접 위해성 정보를 생산하여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

- REACH 시행에 따라 EU로 수출하고자 하는 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전기·전자제품, 자동차, 생활용품 등 완제품(공산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해서도 사전등록기간('08.6.1~11.30)내에 사전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전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 EU로의 수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산업계의 각별한 관심과 대응노력이 필요
- 금번 순회세미나는 중소기업중앙회, 한국환경자원공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대 EU 수출업체 2,500여개 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특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 o 아울러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정보 안내시스템”인 SPi-1357제도도 소개

◎ 산업자원부, 「REACH 기업지원센터」 가동(1.24)

- 산업자원부는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 Registration, Evaluation and Authorization of CHemicals)의 시행('07.6.1)을 앞두고 우리 기업들의 대응능력 제고하고, 대 EU 수출을 차질 없이 지속하기 위해 「REACH 기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함
 - o 금번 설치되는 「REACH 기업지원센터」는 REACH제도 안내, 화학물질 등록가이드 서비스, 중소기업 진단, 화학물질별 컨소시엄 유도 및 등록에 필요한 화학물질 정보제공 등 대 EU 수출 기업지원 창구 역할을 할 것임
- 아울러 EU의 REACH제도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화학분야뿐만 아니라 전 산업분야에 파급영향이 우려됨에 따라 관련 단체 등 산업계·정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REACH 대응 민·관 협의체」 발족을 통하여 우리기업의 중요 정보 보호와 함께 대 EU 수출 대응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 체제를 구축할 예정